농수산물도매시장 ·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(제44조제1항 관련)

		양 곡	청 과			수 산			축 산			화 훼	약 용 작 물
도시인구별 (단위: 명) 시 설		_	30만 미만	30만 이상~100 만 미만	100만 이상	30만 미만	30만 이상 100만 미만	100만 이상	30만 미만	30만 이상 100만 미만	100만 이상	-	-
		m²	m²	m²	m²	m²	m²	m²	m²	m²	m²	m²	m²
대 지		1,650	3,300	8,250	16,500	1,650	3,300	6,600	1,320	2,640	5,280	1,650	1,650
	건 물	660	1,320	3,300	6,600	660	1,320	2,640	530	1,060	2,110	660	660
	경매장(유개[有蓋])	500	990	2,480	4,950	500	990	1,980	170	330	660	500	500
	주 차 장	500	330	830	1,650	170	330	660	170	330	660	330	330
	저온창고(농수산물												
	도매시장만 해당한		300	500	1,000								
	다)												
ত্য	냉 장 실					17	30	50	70	130	200		
필						(20톤)	(40톤)	(60톤)	(80톤)	(160톤)	(240톤)		
수	저 빙 실					17	30	50					
시						(20톤)	(40톤)	(60톤)					
설	쓰레기 처리장	30	30	70	100	30	70	100	70	130	200	30	30
	위 생 시 설	30	30	70	100	30	70	100	30	70	100	30	30
	(수세식 화장실)												
	사 무 실	30	30	50	70	30	50	70	30	70	100	30	30
	하주대기실·	30	30	50	70	30	50	70	30	70	100	30	30
	출하상담실												

부 류 별	양 곡	청 과	수 산	축 산	화 훼	약용작물

기타 시설

- 나. 금융기관의 점포
- 다.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비고

- 1. () 내는 처리능력을 말한다.
- │2. 필수시설 중 "사무실"은 해당 도매시장·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·공판장의 사무실을 말 하다.
- |3.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는 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. 이 경우 부수시설 중 "중도매인 점포"·"중도매인 사무실"을 적용하지 않고. 필수시설에 "시장도매인 점포"를 추가한다.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 필 수시설에 "시장도매인 점포"를 추가하되.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(중도매인의 영업장소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)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부수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은 도매시장·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.
- 5. 충분한 주차장·차량진입도로 및 상하차대와 상·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6. 인구는 개설허가 또는 승인신청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시설 이 설치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.
- 7.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청과부류 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으며, 민영도매시 장·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하다.

- 8. 수산부류중 활어류·패류·해조류·건어류·염건어류·염장어류·건해조류 및 젓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및 저빙실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의 시설기준은 기준시설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9.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·공판장·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산부류시설기준의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
- 10. 산지에 설치되는 공판장의 경우 위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산지에 설치되는 수산물공판장은 위 시설기준에서 80퍼센트를 낮추어 적용할 수 있고, 주차장·사무실·하주대기실·출하상담실을 필수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.